

의안번호	제 77 호	의결사항
의결년월일	1996. 12. (제 회)	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 천 시 장
제출년월일	1996. 12. 19.

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7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6. 12. 17.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개정이유

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(지도직)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,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정책보좌관의 개인별 한시 정원을 삭감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농촌지도소 국가직공무원(지도직) 45명을 직속기관 정원에 포함.
(안 제2조 제3호)
- 시본청 정원중 정책보좌관 2명 정원을 삭감함.(안 제2조 제1호)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456”을 “454”로 하고, 동조 제3호중 “93”을 “138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(한시정원) 시본청 및 사업소 정원 516명중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11명은 1997년 12월 31일까지, 66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(안)
제2조(정원의 총수) 사천시의 본청 ·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시본청 : <u>456</u> 명 2.(생략) 3. 직속기관 : <u>93</u> 명 4. ~ 5.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1. 시본청 : <u>454</u> 명 2.(현행과 같음) 3. 직속기관 : <u>138</u> 명 4. ~ 5. (현행과 같음)			